제 7강 퇴직과 근로자의 권리

임서정

오늘의 학습목표

- ▶ 01. 퇴직 후의 법률관계
 -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갖는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?
 -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속은 유효한가?
 -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미리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?
- ▶ 02. 퇴직급여
 -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?
 - 징계해고를 당한 사람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?
 -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는 무엇이 있는가?
- ▶ 03. 고용보험
 -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?
 -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?
 -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그 금액을 얼마인가?

01. 퇴직 후의 법률관계

1. 퇴직 후의 법적 권리의무관계

- ◆ **근로계약**은 계약기간의 만료, 정당한 해고, 합의에 의한 해약, 정년의 도달 등 다양한 사유로 소멸
 - ▶ 이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주된 권리의무는 소멸함
 - ▶ 그러나 퇴직을 한 후에도 근로계약상 부수적 권리나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음
- ◆ 근로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이지만, 이 외에 도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인수인계, 퇴직금의 정산, 경업금지 특약, 실업급여의 신청 등도 문제됨

2. 사용자의 의무

- ◆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**14일 이내에** 임 금, 보상금, 그 밖에 **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** 함
- ◆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**증명서를 발급해** 주어야 할 의무를 짐
 - 이 증명서(경력증명서 등 여러 명칭으로 발급할 수 있음)는 사용 기간, 업무의 종류, 지위와 임금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, 또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 어야 함
 - ※ 예를 들어 근로자의 징계기록 등과 같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까지 적어서는 안됨
 -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, 퇴직 후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함
- ◆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**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**, 근로자의 퇴직 후에도 3년간 이 근로자 명부와 함께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의 **서류를 보존할 의무를** 짐

(1) 의무복무기간 미준수와 위약예정금지

- ◆ **회사의 지원으로 유학 등을 다녀올 경우**에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유학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의 유효성이 종종 문제됨
 - ▶ 근기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제 결을 금지.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의 미준수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무효
 - 그러나 위 규정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
 - ※ 판례는 그러한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 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약속으로,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①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, ② 근로자의 자발적인 희망과 이익(새로운 기술의 습득 등)까지 고려하여 원래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, ③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근로를 강제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(대법원 2008.10.23. 2006다 37274)

(2)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업금지의무

- ◆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면,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,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던 계약상의 의무는 모두 소멸됨이 원칙
- ◆ 다만, 사용자와의 사이에 퇴직 이후의 **경업금지 등에 관한 별도의 약정**, 즉 특 약을 맺는 경우도 있음
 - 이러한 경업금지의 특약이 "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"는 헌법 제 15
 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지 문제될 것임
 - ▶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, 그러한 약정이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임(대법원 2010.3.11. 2009다82244)

- ◆ 판례는 이러한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, ②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, ③ 경업 제한의 기간•지역 및 대상 직종,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, ⑤ 근로자의 퇴직 경위, ⑥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들고 있음
 - 그리고 구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가 입 게 되는 불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
 - ▶ 사용자의 이익에는 영업비밀 이외에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, 고객 명단이나 영업상의 신용 같은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으며,
 - ▶ 근로자의 불이익은 경업이 제한되는 대상업종이나 기간과 지역 등의 범위를 중심으로 고려함

(3) 근로자의 해지통고와 강제근로의 금지

- ◆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와 달리, 근로자측에서 사직 서 제출 등을 통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 우가 있을 수 있음
 - ▶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일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, 사용자가 이러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있음
 - ▶ 근로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(민법 제660조 제1항), 이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됨(민법 제66조 제2항)
 - ▶ 반면 **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** 경우라면 '부득이한 사유'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허용되지 않으며, '부득이한 사유'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 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음(민법 제661조)

- ▶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기 때문에(근기 법 제7조) 근로계약 해지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는 없음
- ◆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가 사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**일정기간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하도록** 규정하고, 이를 위반할 때에는 **손해를 배상하여야**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음
 - ▶ 그러나 이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(근기법 제7조),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으며, 또 실제 발생한 손해와 관계없이 미리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정해 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(근기법 제20조)
 - 물론 사용자측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그 손해액에 대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

02. 퇴직급여

1. 퇴직급여의 의의

- ◆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을 하지 만 **퇴직을 하게 되면** 더 이상 생활을 위한 임금을 얻지 못하게 됨
- ◆ **퇴직 급여법**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공적연금이나 개인적 저축 이외에도 노후소 득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**퇴직급여제도**를 규정

2. 퇴직급여의 수급요건

(1) 퇴직급여법의 적용범위

- ◆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**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** 적용
 - ▶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적용제외

(2) 퇴직급여의 수급요건

- ◆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 자에 대하여 지급(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)
- ◆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규정은 **강행규정**으로서 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임의퇴직인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하<mark>한</mark>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함(대법원 2004.6.25.. 2002다51555)

(1) 퇴직급여의 종류

- ◆ 퇴직급여법은 근기법에 규정되어 오던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의 형태로 지급 하는 제도의 도입을 설정
 - ▶ 퇴직 후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에도 다수의 군 로자가 퇴직할 때에 기업의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취지도 있음
- ◆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포함됨
 - ▶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연금이며,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적립 부담이 변동
 - ▶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연금이며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연금의 수준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
 - > 개인형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형태인데,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에 미확정

(2) 퇴직급여의 내용

- ◆ 퇴직금(일시금)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(퇴직급여법 제8조)
 - ▶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을 경우의 급여 혹은 부담금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또는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으로 규정
- ◆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**14일 이내에 퇴직금을** 지급하여야 함
 - 퇴직금은 근로자의 후불임금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액되지 않음
 - 다만, 퇴직금 누진제나 공무원 연금처럼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수준에서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음
 - ▶ 퇴직금을 받은 권리는 **3년의 시효로** 소멸함
- ◆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**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이전하는** 방법으로 지급 하여야 함(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)

(3) 퇴직급여의 중간정산

- ◆ **종래에는**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**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자유로이 허용**
 - ▶ 그러나 퇴직급여법의 전부개정으로 지급은 주택구입이나 부양가족의 요양 필요성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고,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퇴직금의 중 간정산이 가능(제8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 - 중간정산은 이렇듯 사유를 제한하여서만 허용되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 연봉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의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, 합법적인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효임

4. 퇴직급여의 우선변제

- ◆ **퇴직금**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성격을 가짐
 - ▶ 또한 퇴직 이후의 생활을 위한 중요한 (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) 수단이므로 임금과 마찬가지로 **사용자가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**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◆ 따라서 **임금채권 및 퇴직급여는** 다음의 순서로 변제됨
 -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, 재해보상금, 최종 3년간의 퇴직금,
 -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•공과금
 -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,
 - ④ 임금, 재해보상금,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,
 - 5 조세•공과금 및 다른 채권

03. 고용보험

1. 고용보험의 의의

- ◆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실업은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**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** 사회적 위험임
 -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, 많은 국가에서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정부,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 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
- ◆ 고용보험법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•직업능력개발 사업, 실업급여,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음
 - ▶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그간 근로자로 한정되었으나, 2021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 는 피보험자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"근로자,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 자"(제2조 제1호 가목)로 확대
 - ※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안정 및 조기 재취 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 임

2.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

(1) 실업급여의 의의

- ◆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**새로운 직장에 재**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말함
 - > 기본적으로는 **실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** 위함 목적을 가짐

(2) 실업급여의 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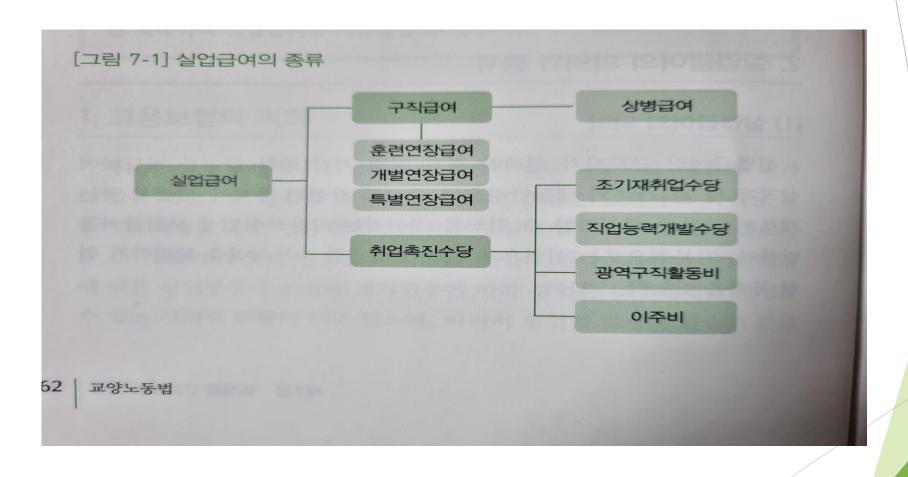
- ◆ 실업급여는 크게 **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**의 두 가지로 구분(고용보험법 제 37조 제1항)
- ◆ **구직급여**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급여임

2.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

- 실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상◆질병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에 대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제도와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연장급여(훈련연장급여, 개별연장급여, 특별연장급여)도 구직급여의 한 형태임
- ◆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조기재취업 수당, 직업능력개 발 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가 있음(고용보험법 제37조 제2항)
- ◆ 또한 **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** 이루어짐
 -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 및 직업훈련 상담을 한 후, 직업훈련 상담 확인증을 수령, 훈련기관을 방문하여 훈련수강을 신청하면 됨
 - ▶ 이후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(고용보험법 제29조)

02. 퇴직급여

2.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



3. 구직급여

(1) 구직급여의 수급요건

- ◆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 -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 야 함.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씩 일한 경우라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수급자격을 가짐
 -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(비자발적 이직). 따라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둔경우에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되지 않음
 - ③ 적극적인 재취업활동(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미지급)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야 함
 - 4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.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 고되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

(2) 구직급여의 내용

- ◆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기간으로 나뉨
 - 지급되는 하루의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이며, 최고액과 최저액의 제한 이 있음
- ◆ **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** 더 이상 받을 수 없음
 - ▶ 다만,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에 성공하여 12개월이 경과된 경우,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의 50%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

(3) 부정수급

- ◆ **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수급**한 경우를 부정수급이라 함
 - 수급신청시 이직사유나 임금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, 취업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,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나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다고 하거나,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, 근로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신고하 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
 - ▶ 따라서 재취업을 하였거나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, 단기간의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, 수당을 지급받는 교육에 참가한 경우,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음
- ◆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,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지되고,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액은 반환해야 하며, 이와 함께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5 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4. 국민취업지원제도

- ◆ 2021년부터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, 한 국형 실업부조인 '국민취업지원제도'가 시행됨
 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(저소독 구직자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)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,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고용안정망 제도임
- ◆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 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음

참고자료

주 자료: 한국노동법학회(2022), 교양노동법 제3판, 문우사.

보조자료: 임종률(2022), 노동법 제20판, 박영사.

사례참조: 박귀천•박은정•권오성(2021),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, 박영사.